



제439회 국회 (정기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3개 법률안 검 토 보 고

〈형사사법절차 개편에 따른 관련 법률 정비〉
■ 김기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21213호) 등
13개 법률안

2026. 9.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심 정 희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5
III. 검토의견	6
1. 개정법률안들의 주요내용	6
2. 검토의견	11
가. 특별검사 등의 수사권 근거 등 보완	11
나. 수사·기소 분리애 따른 송치 후 사건 처리 관련 규정 정비	13
다. 피해자 보호 취지의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및 면담제도 관련 정비	15
라.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리와의 관계 관련 규정 정비	16
마. 재정신청 사건의 관할법원 변경에 따른 정비	16
바. 부칙	18
사. 종합의견	18
아. 관계기관 의견	19

I. 제안경위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 제 안 자 : 김한규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6. 9. 8.

다. 회 부 일 : 2026. 9. 8.

2.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 제 안 자 : 박지원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6. 9. 8.

다. 회 부 일 : 2026. 9. 8.

3.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가. 제 안 자 : 박균택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6. 9. 8.

다. 회 부 일 : 2026. 9. 8.

4.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 제 안 자 : 김한규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6. 9. 8.

다. 회 부 일 : 2026. 9. 8.

5.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 제 안 자 : 이성윤의원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6. 9. 8.

다. 회 부 일 : 2026. 9. 8.

6.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 제 안 자 : 박지원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6. 9. 8.

다. 회 부 일 : 2026. 9. 8.

7.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가. 제 안 자 : 김남희의원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6. 9. 8.

다. 회 부 일 : 2026. 9. 8.

8.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 제 안 자 : 박균택의원 등 12인

나. 제 안 일 : 2026. 9. 8.

다. 회 부 일 : 2026. 9. 8.

9.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가. 제 안 자 : 김남희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6. 9. 8.

다. 회 부 일 : 2026. 9. 8.

1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 제 안 자 : 김기표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6. 9. 8.

다. 회 부 일 : 2026. 9. 8.

1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 제 안 자 : 김용민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6. 9. 8.

다. 회 부 일 : 2026. 9. 8.

12.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 제 안 자 : 김동아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6. 9. 8.

다. 회 부 일 : 2026. 9. 8.

1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여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 제 안 자 : 김용민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6. 9. 8.

다. 회 부 일 : 2026. 9. 8.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13. 13개 법률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음.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Ⅲ. 검토의견

1. 개정 법률안들의 주요내용

1) 입법 배경

13개 법률안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될 「검찰청법」 폐지, 「공소청법」 제정·시행 및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른 관련 법률의 후속 정비를 위한 입법으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새로운 형사사법절차 및 조직 개편에 맞추어 이와 관련된 현행 법률의 규정들을 일괄 정비하려는 취지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 10. 2. 시행. 이하 “개정 형사소송법”)은 i) 검사의 직접수사권 및 보완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권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ii) 검사의 직접적인 영장의 청구와 집행은 삭제하여 ‘사법경찰관의 신청’을 전제로 한 영장의 청구와 사법경찰관에 의한 집행만 가능하게 하며, iii)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 수사지휘권 폐지 및 상호 협력으로 대체하며, vi) 사법경찰관이 압수·수색·검증을 실시하는 경우 강제수사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을 영상녹화 하도록 하고,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피의자의 진술 과정을 녹음하도록 하며, v) 검사의 피해자 의견청취 절차 및 이의신청·재정신청권자 확대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임.

2) 특별검사 등의 수사권 근거 등 보완

개정 형사소송법에서 검사의 직접수사권 및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함에 따라, 종전의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수사 관련 권한을 준용하던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²⁾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임명되는 특별검사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사(이하 “수사처검사”)의 수사권 근거를 보완하고, 특별검사, 수사처검사 및 군검사의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통신제한조치 등의 근거를 보완함.

「군사법원법」의 경우, 개정 형사소송법³⁾에 따른 수사 및 공소 업무의 전자적 관리와 압수·수색·검증의 영상녹화 및 피의자 신문 등의 녹음을 통한 검사 및 사법경찰관의 수사·공소 업무에 대

1)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 ⑦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제4조제2항은 제외한다), 「군사법원법」, 그 밖의 법령 중 검사와 군검찰관의 권한에 관한 규정은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특별검사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다른 법률의 준용) 그 밖에 수사처검사 및 수사처수사관의 이 법에 따른 직무와 권한 등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검찰청법」(다만, 제4조제1항제2호·제4호·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은 제외한다),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3)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수사 및 공소 업무에 대한 전자적 관리) ① 사법경찰관리 및 다른 법률에 따른 수사기관의 수사담당 공무원은 이 법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작성·보관·처리할 때에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지체 없이 시간 순서에 따라 빠짐없이 기록·등재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송치받거나 송부된 사건에 대하여 이 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보완수사요구 등을 하거나 공소제기를 하는 경우 관련 서류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지체 없이 기록·등재하여야 한다.

제220조의2(압수·수색·검증의 영상녹화) ① 사법경찰관은 영장이나 제216조 및 제217조에 따라 압수·수색·검증을 실시하는 경우 강제수사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을 영상녹화장치(신체 착용형 촬영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촬영·녹화하여야 한다. 다만, 영상녹화장치가 없거나 신속한 수사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일: 2027. 8. 5.]

제244조의6(피의자신문 등의 녹음) ① 사법경찰관은 제244조의2에 따라 영상녹화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피의자신문의 전 과정을 녹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녹음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시행일: 2027. 8. 5.]

한 절차적 통제를 군검사 및 군수사기관의 공소 및 수사업무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함.

3)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송치 후 사건 처리 관련 규정 정비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수사·기소 분리에 따라 송치된 사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외국법자문사법」 등을 정비함.

4) 피해자 보호 취지의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및 면담제도 관련 정비

개정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⁴⁾에서 검사가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또는 불송치사건의 재수사요구 여부 결정 등에 필요한 때에는 사실관계 확인 및 피해자 면담이 가능하게 제도화됨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5개 법률을 이를 반영하여 정비함.

5)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리와의 관계 관련 정비

개정 형사소송법에서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리와의 관계를 ‘지휘 관계’에서 ‘협력관계’로 변경함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에

4)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등) ①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재수사요구 여부의 결정 및 공소유지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 사건관계인, 전문가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의견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는 방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이하 "사실관계 확인"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고소인등은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사실관계 확인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해당 신청의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대하여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도록 하던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정비함.

6) 재정신청 사건의 관할법원 변경에 따른 정비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정신청 사건의 관할법원이 “고등법원”에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변경됨에 따라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정비함.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한 13개 법률]

연번	법률명	조문	내용	분류
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공수처 수사대상에 중수청 수사관 추가	중수청 신설
		제8조, 제10조, 제12조, 제17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9조, 제47조	검찰청 명칭 변경, 검찰청법 인용, 재정신청 관할 정비	공소청 명칭
		제23조의2~제23조의5, 제26조의2, 제27조의2	공수처검사 수사 근거 보완	수사권 조정
2	군사법원법	제121조, 제228조의3, 제286조, 제473조, 제474조, 제475조	검찰청 명칭 변경, 사건 이첩, 사건송치(중수청 추가)	공소청 명칭
		제122조, 제178조, 제179조	수사 촉탁, 구속영장 집행, 사건 이첩, 사건송치 관련 검사 권한 조정	수사권 조정
		제231조의2, 제236조의6, 제259조의2	형소법 개정사항(전자적 처리, 영상녹화, 녹음) 반영	수사권 조정
3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	검사의 수사지휘, 사경 지휘(검찰청 명칭 변경 및 검사와 관계 조정)	특사경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성매매피해자 보호조치, 신뢰관계자 동석 대상 등에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절차 명시	피해자 보호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24조, 제26조, 제27조, 제29조, 제30조, 제34조, 제36조, 제38조, 제41조	피해자 신원누설금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등에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절차 명시	피해자 보호
		제30조	19세미만피해자등 진술 내용 등의 영상녹화 규정 정비	수사권 조정

연번	법률명	조문	내용	분류
6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7조의2~제17조의4	스토킹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등에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절차 명시	피해자 보호
		제17조의10	이행실태 조사 기관명칭 정비	공소청 명칭
7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17조	피해아동에 대한 변호사 선임 등에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절차 명시	피해자 보호
		제17조의3, 제25조, 제35조, 제41조, 제53조	검사의 결정 전 조사, 보호처분의 취소, 이행실태의 조사의 기관 명칭 정비	공소청 명칭
8	외국법자문사법	제46조	범죄수사 등 검찰업무 수행 중 징계사유 발견시 징계 청구(사유 조정)	수사권 조정
9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의 위험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5조, 부칙 제2조	특별검사의 직무범위, 권한, 의무, 보수 및 수사기간 경과시 지검장에 인계(기관 명칭 등 정비)	공소청 명칭
		제7조, 제9조, 부칙 제5조	특별검사의 수사 근거 보완	수사권 조정
10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9조의3, 제12조의2, 제13조, 제13조의3, 제13조의4, 제15조의3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등의 주체 규정 정비	수사권 조정
11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3조,	특별검사의 직무범위, 권한, 의무, 보수 및 수사기간 경과시 지검장에 인계(기관 명칭 등 정비)	공소청 명칭
		제7조, 제8조, 제8조의2~제8조의4,	특별검사의 수사 근거 보완	수사권 조정
12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8조의2	송치 단계의 피해자 보호 및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등	피해자 보호
13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재정신청(검찰청 명칭 변경 및 재정신청 관할)	공소청 명칭 및 재정신청 관할

2. 검토의견

가. 특별검사 등의 수사권 근거 등 보완

1) 특별검사와 수사처검사의 수사 관련 규정 보완

개정 형사소송법 부칙⁵⁾에서 검사의 수사 권한 삭제와 관련하여 수사처검사 및 특별검사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였으나, 수사를 통해 국민의 신체의 자유 등을 제한하는 특별검사 등의 공권력 행사의 근거와 방법은 법률에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 점에서,⁶⁾ 임시적인 경과조치만으로는 특별검사 등의 적법절차에 의한 수사를 담보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특히, 개정 형사소송법에서 검사의 수사권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특별검사 및 수사처검사의 수사절차, 영장의 청구, 구속기간에 대한 계산, 공소청 소속 검사의 수사처검사에 대한 보완수사요구 등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게 되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특별검사와 수사처검사의 수사 관련 규정을 보완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의 사법경찰관리의 수사 규정을 준용

5) 개정 형사소송법 부칙

제14조(특별검사 등에 관한 경과조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의 개정규정(검사의 수사권·지휘권과 관련된 부분을 말한다)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직위에 있는 자의 직무와 권한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검사의 수사권·지휘권과 관련된 부분을 말한다)에 따른다.

1.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의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
2.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경우의 특별검사, 특별검사보 및 파견검사
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처장, 차장 및 수사처검사

6) “행정부가 법률에 근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재산을 침해하는 경우 법률이 수권의 범위를 명확하게 확정해야”(헌법재판소 2008. 1. 10. 선고 2007헌마1468 결정례 등)

하여 수사 근거를 보완할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특별검사 및 수사처검사에 적용할 「형사소송법」의 구체적인 수사 규정들이 적정한지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으나,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비교할 때,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 제220조의2, 제238조, 제244조의6 및 제245조의13⁷⁾은 적용하지 않는데, 이는 수사 대상이 한정되어 고소를 전제로 하는 규정을 적용하기 적절하지 않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제한이 있는 특별검사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통신비밀보호법」의 경우에도, 종전에 검사와 군검사에 대해서만 통신제한조치의 주체로 규정하고, 수사권한이 있는 특별검사 및 수사처검사의 통신제한조치의 명시적인 근거가 없었던 점에서, 검

7)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수사 및 공소 업무에 대한 전자적 관리) ① 사법경찰관리 및 다른 법률에 따른 수사기관의 수사담당 공무원은 이 법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작성·보관·처리할 때에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지체 없이 시간 순서에 따라 빠짐없이 기록·등재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220조의2(압수·수색·검증의 영상녹화) ① 사법경찰관은 영장이나 제216조 및 제217조에 따라 압수·수색·검증을 실시하는 경우 강제수사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을 영상녹화장치(신체 착용형 촬영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촬영·녹화하여야 한다. 다만, 영상녹화장치가 없거나 신속한 수사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일: 2027. 8. 5.]

② ~ ⑤ (생략)

제238조(고소 등에 의한 사건의 수사)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송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44조의6(피의자신문 등의 녹음) ① 사법경찰관은 제244조의2에 따라 영상녹화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피의자신문의 전 과정을 녹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녹음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②·③ (생략) [시행일: 2027. 8. 5.]

제245조의13(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등) ①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재수사요구 여부의 결정 및 공소유지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 사건관계인, 전문가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의견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는 방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이하 “사실관계 확인”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고소인등은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사실관계 확인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해당 신청의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④ (생략)

사의 수사권 삭제와 함께 특별검사 및 수사처검사의 통신제한조치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개정법률안은 입법필요성이 인정됨.

2) 군검사 및 군수사기관의 수사절차 보완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법경찰관과 검사의 수사 및 공소 업무를 전자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사법경찰관이 압수·수색·검증을 실시하는 경우 강제수사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을 영상녹화하도록 하며,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피의자의 진술 과정을 녹음하도록 함으로써,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 및 공소 업무에 대한 절차적 통제장치가 강화되었음.⁸⁾

이러한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수사 및 공소 업무의 전자적 관리와 압수·수색·검증의 영상녹화 및 피의자 신문 등의 녹음을 통한 사법경찰관의 수사에 대한 절차적 통제의 필요성은 군검사 및 군수사기관의 업무에도 동일한 점에서 「군사법원법」의 개정 취지가 인정됨.

나.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송치 후 사건 처리 관련 규정 정비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청 및 검사는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기관이 아니라 송치된 형사사건의 공소제기 처분 등을 담당하는 공소기관으로 법적 기능이 변경된 것에 맞춰, 검찰청 및 검사의 수사를 전제로 하고 있는 규정들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8) 각주 6) 참조

다만, 「외국법자문사법」 제46조는 검사에게 송치된 사건에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려는 취지이나, 공소청의 범위와 해당 사건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 수정의견 >

[illegible]

자문사. 다만, 외국법 자문사가 제24조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나. (생략)	- . ----- ----- ----- -----, 가.·나. (현행과 같 음)	- . ----- ----- ----- -----, 가.·나. (개정안과 같 음)
다. <u>수사기관에서 취 급 중인 수사 사건</u>	다. <u>공소청 또는 수사 기관-----</u> -----	다. <u>공소청(광역공소 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 청을 포함한다)에 서 처리 중인 형 사사건</u> 라. <u>수사기관에서 취 급 중인 수사 사건</u>
<u>라.·마.</u> (생략)	<u>라.·마.</u> (현행과 같 음)	<u>마.·바.</u> (현행 라목 및 마목과 같음)

다. 피해자 보호 취지의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및 면담제도 관련 정비

개정 형사소송법에서 검사가 송치된 사건의 공소제기 및 재수사
요구 여부의 결정 또는 공소유지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 사건관
계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등 사실관계 확인을 할 수 있도
록 함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관련
법률의 피해자 보조인 제도, 피해자 전담검사 제도 등이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및 면담’ 시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개정법률안들은 그

입법 취지 및 입법 타당성이 인정됨.

라.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리와의 관계 관련 정비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리와의 관계를 ‘지휘관계’에서 ‘협력관계’로 변경하였는바,⁹⁾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에 대하여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도록 하던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 등을 ‘협력관계’에 따라 “검사의 지도·조언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것은 그 입법 취지 및 입법 타당성이 인정됨.

마. 재정신청 사건의 관할법원 변경에 따른 정비

개정 형사소송법은 고발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대상에 가정폭력범죄, 노인·아동·장애인 학대범죄 및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의무가 있고 해당 범죄에 대하여 고발을 한 자를 추가하면서, 재정신청 사건의 관할 법원을 종전의 ‘고등법원’에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변경하였는바,¹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

9) 개정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특별사법경찰관리) ②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도·조언을 요청할 수 있고, 검사도 필요한 경우 지도·조언을 할 수 있다.

10) 개정 형사소송법

제260조(재정신청) ①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와 다음 각 호의 범죄에 대하여 고발을 한 자(제2호부터 제6호까지는 해당 법률에서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자로 한정한다)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공소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이하 이 조 및 제261조에서 “관할 지방법원”이라 한다)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형법」 제123조, 제123조의2 및 제124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

영에 관한 법률」 11) 등에 따른 재정신청 사건의 관할 법원을 지방 법원 본원 합의부로 정비하는 것은 ‘기본이 되는 법률에서 제도를 신설·변경할 때 관련 법률을 기본이 되는 법률에 맞도록 개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입법 취지 및 입법 타당성이 인정됨.

다만,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일반 형사사건에서 재정신청 사건의 관할법원이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변경된 것과 달리,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있는 형사사건의 재정신청 사건의 관할법원은 「군사법원법」의 특수성¹²⁾으로 현행 규정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개정안 중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별법」의 재정신청 사건의 관할법원을 정비하는 경우에도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군사법원법」에 따를 필요가 있음.

<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수정의견 >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의 건
제4조(재정신청에 관한 특별) ① 제2조의 죄에 대하여 고소 또는 고발을	제4조(재정신청에 관한 특별) ① ----- -----	제4조(재정신청에 관한 특별) ① ----- -----

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정폭력범죄

3.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5호에 따른 노인학대관련범죄

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6.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

1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재정신청에 대한 특별) ① 고소·고발인은 수사처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서울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12) 「군사법원법」은 1심사건을 군사법원이 관할하고, 같은 법률에는 지방법원의 심판사항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에서,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있는 재정신청사건의 관할법원을 변경하는 부분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한 자가 검사나 군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u>그 검사 소속의 고등검찰청이나 그 군검사 소속의 고등검찰부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當否)에 관한 재정(裁定)을 신청할 수 있다.</u>	----- ----- ----- ----- <u>그 검사 소속의 광역공소청이나 그 군검사 소속의 고등검찰부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u> ----- -----.	----- ----- ----- ----- <u>그 검사 소속의 지방공소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및 그 군검사 소속의 고등검찰부에 대응하는 고등법원</u>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바. 부칙

검사의 통신제한조치를 삭제하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해서는 법률 제21490호 공소청법 부칙 제6조제2항 단서 및 개정 형사소송법 부칙 제12조제1항과 동일하게 ‘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를 둘 필요가 없는지에 대한 입법정책적 검토가 필요함.

사. 종합의견

13개 법률안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될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검사의 수사권 폐지 등 형사사법절차 개편에 맞게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종래 검사의 권한을 준용하던 특별검사 등의 수사권 근거를 명확히 하여 특별검사 등의 적법절차에 의한 수사를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 취지 및 입법 타당성이 인정됨. 다만, 「외국법자

문사법」 제46조는 해당 규정과 송치된 사건과의 관계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는 개정 형사소송법 및 「군사법원법」에 맞춰 재정신청 사건의 관할을 수정하는 등 일부 보완이 필요함.

아. 관계기관 의견

법무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제5항의 경우, 수사처검사의 권한에 대해 ‘검찰청법’,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검사의 권한 규정’만을 준용한 현행 법률에 비해 권한을 확장 부여하는 취지이므로, 다른 법률에서 정한 사법경찰관의 권한을 일별하여 분석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통신비밀보호법」의 경우 「공소청법」 부칙 및 개정 형사소송법 부칙에 따라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등 한시적으로 수사가 가능한 사건에 대한 경과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경우, 수사대상의 범위를 경찰공무원(총경)과 중수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까지 편입할 필요가 있으며(안 제2조제1호거목), 수사처검사의 구속기간과 관련하여 ‘사법경찰관’이 검사에 대하여 하는 ‘인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점에서 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송부’ 개념을 활용할 필요가 있고(안 제23조

의3제1항), 공소청검사의 공수처검사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 관련 논란을 해소하고 공수처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소청 검사가 보완수사 요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공소청 검사의 추가 수사의뢰를 받은 때에는 협조할 수 있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안 제26조제2항 및 제3항).

국방부는 「군사법원법」의 경우, 개정 형사소송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나, 수사 및 공소 업무에 대한 전자적 관리를 위한 기반 조성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점 고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입법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구축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한 충분한 유예기간(7년 이상)을 부여한 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임(안 제231조의2).

문 의 처
02)6788-5056